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2019. 7월

삼성에스디에스(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4.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교부 및 공지)

1.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4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용자의 관리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구비합니다.
2.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①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 ②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 ③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6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합니다.

- ①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
- ②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
- ③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

제7조 (이용자의 보호조치)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용자의 장비가 제3자에게 이용당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 ② 사용자 장비의 S/W 또는 H/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회사의 시스템에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①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 ②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 점검
 - ③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 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조치 실시
3. 회사는 이용자가 제2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3조1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 접수 후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팩스, 서면으로 답변을 발송합니다.

제8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4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3.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전항의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일시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9조 (고지사항)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합니다.

- 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 ②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 ③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 ④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10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합니다.
 -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 ② 거래 금액
 - ③ 거래 상대방
 - ④ 거래 일시
 - ⑤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 ⑥ 기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보존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합니다.
4.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제13조 제1항의 삼성SDS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정정 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12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1. 이용자는 다음의 담당자에게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삼성SDS 고객센터(1661-3311, cscenter@samsung.com)
 - ② 이용자보호 책임자(유중식, 02-6155-7246, jungsig.ryu@samsung.com)
 - ③ 이용자보호 담당자(맹재현, 02-6155-7543, jaehyun.meng@samsung.com)
2.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요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14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피해를 유발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요금서비스 제공을 차단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함께 청구된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재화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소비자단체” 등 이용자보호 관련 법적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 ② 기타 통신요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제15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요금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요금업무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 칙

1. 이 약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